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소방본부장·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시·도별 소방공무원(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합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인천 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 광역시	울산 광역시	세종 특별 자치 시	경기 도	강원 도	충청 북도	충청 남도	전라 북도	전라 남도	경상 북도	경상 남도	제주 특별 자치 도
총계	65,860	7,490	3,748	2,909	3,397	1,618	1,627	1,399	585	11,271	4,463	2,845	4,266	3,456	4,516	5,560	5,481	1,229
소방 준감 이하	65,860	7,490	3,748	2,909	3,397	1,618	1,627	1,399	585	11,271	4,463	2,845	4,266	3,456	4,516	5,560	5,481	1,229

비고: 법률 제11829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6호 및 제43조제3항을 시범실시 중인 경상남도 창원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소방준감 이하 1,108명)은 위 정원표에 따른 경상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포함한다.